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한 상 욱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	2023-32
-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2. 24.

발 의 자 : 한상욱, 박성호, 고찬양,  
이충현, 신찬호, 홍재희,  
전철규, 최세진

### 1. 제안이유

현행 강서구의회의 정례회 회기는 연 2회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의회 회의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8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60일 이내에서 연 2회 80일 이내로 연장함  
(안 제3조)

나.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(안 제1조 및 제4조제1호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협조부서 : 의회사무국

다. 입법예고 : 2023. 2. 27. ~ 3. 6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4조”를 “제54조, 제56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60일”을 “80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 전단 중 “제49조제1항”을 “법 제4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<u>제54조</u>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회기) 의회의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<u>60일</u>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각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.</p> <p>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 및 심의안건)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 및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하며 법 제47조제1항제3호 결산의 승인, <u>제49조제1항</u>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다만,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·10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54조, 제56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회기) ----- ----- <u>80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 및 심의안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법 제49조</u>----- <u>제1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다.

2.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**제53조(정례회)**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54조(임시회)**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56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**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